

5.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施行令中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92-10號 1992. 1. 29

1. 개정이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1991. 12. 31. 법률 제4484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함.
- 나. 국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수도사업과 신공항건설사업을 포함시킴.
- 다.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절차, 발행방법 및 사무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라.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의 취득원인이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함.

마.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알선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토지국장, 전화번호 500-2849, 285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